



事例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 법규 질의·응답 해설(연재Ⅳ)

최근 환경청 권혁진 법무담당관이 발간한 「사례 중심으로 본 환경보전법규 질의·응답해설」 중에서 질의·응답해설 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註>

1.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방지시설 포함여부

[1]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부산지도 31602-8808
(‘87.7.11.)

회신 : 대관 31720-7593
(87.8.3.)

2. 질의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방지시설도 포함되는지 ?

3. 회신내용

허가사항에 포함된다.

4. 이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방지시설 설치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동 시설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사항에는 방지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16 조.

[2] 해설

1. 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의 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장의 생산시설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공해 공장의 무분별한 설치로부터 국가의 환경자원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해공장은 자유로운 설치를 국가가 법

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도란 공해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설치 전에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일반적 규제를 해제하여 동 공해공장(엄밀히는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을 개별적으로 허용하는 대물적 허가제도를 말한다.

2.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특징

가. 사전허가

○ 공장설치 이전에 제출된 허가신청서상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일정요건 충족을 전제로 허가하는 사전허가이다.

나. 대물허가

○ 사업주의 기술능력을 고려하는 대인적 허가가 아니고 법상 소정의 물적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허가할 수 있는 대물적 허가임.

다. 무기한허가

○ 허가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가의 경신제도도 없다. 따라서 당초 배출시설이 존재하는 동안 허가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당초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변경할 경우(시설이 낡아 일부시설의 개체·보수 등)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것이 사실상 허가갱신제도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라. 기속허가

○ 법상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되는 기속허가라 할 수 있으며, 허가요건을 충족해도 공익의 우선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자유재량허가는 아니라고 본다.

3.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요건

○ 시행령상의 설치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 공정도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 연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산업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 토지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기술감리에 합격할 것.

4. 허가의 효과

○ 법상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배출시설(공해공장)을 설치할 수 있

다.

○ 그러나 본 허가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에도 불구하고 차동적으로 동 시설의 조업·운영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업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지는 않았지만 배출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청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판정에 합격하지 않으면 조업을 개시할 수 없다.

5. 불허가 사유

○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현저히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수 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 안에서 특정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청장이 고시한 지역 및 시설

○ 환경보전법상 허가요건을 갖추어 신청한다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 등 토지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한 공해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한 지역

6. 결 론

○ 배출시설 설치허가란 좁은 의미의 배출시설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 중의 모든 시설(예: 방지시설)이 포함되는 광의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라 볼 수 있다.

2. 경과조치기간 이후 허가신청시 허가가능 여부

[1]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근거

질의 : 서울 계획 31602-1554
('87.8.25)

회신 : 대관 31720-10158
(87.10.23)

2. 질의내용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표백시설, 수세식 탈취시설 등)이 있는 경우, 경과조치기간 이후에 허가(변경허가 포함) 신청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시내용

경과조치기간 이후에는 허가할 수 없다.

4. 이유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 그 기득권을 인정하여 처리하되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그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기간 경과 후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은 타법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경과조치기간 이후의 동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2) 해설

1. 종전에는 배출시설이 아니던 재화나 용역의 생산시설이 신규로 배출시설로 지정되는 경우

○ 종전에 있었던 업종 또는 생산시설이지만 배출오염물질의 내용이 변화하여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경우

○ 종전에 있었던 업종이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내용도 동일하나 환경파괴에 대한 영향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2. 표지 관계법령과의 관계

○ 문제의 공장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동법에 의하면 소위 공해를 배출하는 배출시설로 지정된 공해공장은 동 지역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문제의 공장은 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

3. 종전에 없던 신규 배출시설(공해공장)에 따른 효과

○ 건축법 및 환경보전법상 동 지역의 문제의 업종에 속하는 기존의 모든 생산시설은 불법무허가 배출시설이 됨.

○ 더구나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동 지역에서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으며, 보전법상의 요건충족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

4. 경과조치기간의 설정

○ 종전부터 설치·운영해 오던 비공해공장이 갑자기 배출시설(공해공장)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보전법상의 요건충족시까지 잠정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어 조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 또한 건축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위와 같이 될 경우 국민의 기득권은 현저히 침해당하게 됨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기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합법적인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에는 무허가 배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조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보전법상의 요건만 충족되면 건축법상의 요건충족여부에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할 수 있다.

5. 경과조치기간 이후의 문제

○ 경과조치기간의 설정은 국민의 기득권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만 동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 한 것은 아님.

○ 따라서 경과조치기간을 지나서도 배출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 배출시설로서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건축법 등 타법상의 저촉이 없는 한 경과조치기간 경과 후에도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할 수 있으며, 보전법상의 허가요건(방지시설 설치 등)이 충족되면 허가신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다.

6. 본 사례의 경우

○ 본 사안의 경우는 문제의 배출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 단순한 환경보전법상의 요건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법상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이다.

환경지정장관할 사업장의 허가시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함께 있어서 건축법 등 타법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통보받아 판단하고 있다.

★ 생활의 지혜 ★

알아두면 편리한 가정상식

○ 카펫 선택의 요령

실내나 마루에 까는 카펫은 털이 길고 밀도가 짙은 것이 좋은데, 구입할 때는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 발로 밟아 보아서 감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빛깔이나 무늬가 잘 조화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짙은 색깔은 방을 넓게 보이게 하므로 이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햇볕이 잘 드는 방에는 청색 계통이 좋고 잘 들지 않는 방은 다른 유색 계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광택을 잃은 반지 손질법

아름다운 자연색을 금으로 세팅한 반지가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금은 녹슬지 않은 것으로만 알고 손질을 하지 않으면 광택을 잃기가 쉽다.

반지 세팅용 금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표면에 녹이 슬기 마련이다. 가끔 중탄산소오다를 부드러운 가아제에 묻혀 반지를 닦는다. 소오다는 다른 약과 달라 금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새것처럼 아름다운 광채를 내게 한다.

7. 결 론

본 사안의 경우 경과조치기간 경과 후에는 예외를 인정치 않게 되어 있는바, 사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동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동 사업장을 이전시키는 외에 적법한 허기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탄력적인 법운용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 집에서 하는 넥타이 세탁

넥타이를 가정에서 세탁하는 방법으로서 우선 1리터가량되는 끓는 물에 글 껍질 반개분 정도를 넣었다가 꺼내고 그 물에 중성세제를 탄다.

그런 다음 신문지로 통을 만들고 그위에 비닐을 씌워 넥타이 속에 끼워넣고 타 놓은 세제액을 세탁솔에 묻혀 넥타이 전체를 두드리면 된다.

이렇게 한 다음 통을 빼고 맑은 물에 헹구어 타월로 물기를 닦아 낸다. 그리고 물기가 없어지면 통을 다시 끼워 그늘에 말리면 된다.

○ 옷에 묻은 커피 (Coffee)는

밝은 색깔의 옷을 입게 되는 계절에는 외출증에 커피가 옷에 묻으면 두드러지게 표가 나서 곤란해질 때가 많다.

이럴 때에는 곧바로 화장지에다 더운 물을 적셔서 커피가 묻은 자리 위에 대고 살짝 눌러준다.

그렇게 해서 물기가 마르면 얼룩이 감쪽같이 흡수되어서 신경을 쓰지 않고도 외출을 마칠 수가 있다. 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서너번 되풀이하면 대개는 빠진다.

작은으로 가꾸는 보람의 성숙사회